

#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1683
----------	------

2020. 9. 8.  
도시계획관리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# 1. 제안경위

- 2020. 7. 13.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(2020. 7. 14. 회부)

## 2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(안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신설).

## 4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에 따라 실시된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“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” 심의결과 제시된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서윤기 의원이 발의하여 ‘20년 7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.

○ 현행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(이하 '인권기본조례')에서는 시민의 인권<sup>1)</sup>과 관련하여 타 조례를 제·개정하는 경우 인권기본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규정하면서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라 '인권영향평가'<sup>2)</sup>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(붙임-1 참고).

○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'20.4.2. “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”(이하 '인권위원회')를 개최하여 인권영향평가결과 확인된 자치법규의 인권침해적 조항에 대하여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개정을 권고하였음<sup>3)</sup>.

-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단(인권위원회, 서울연구원, 변호사 등)의 검토·협의를 거쳐 3개 분야<sup>4)</sup> 9개 항목<sup>5)</sup>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는데, 그 결과 총 96개 조항(조례 57개, 규칙 5개)에서 보완사항이 도출되었고, 이를 토대로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조항의 개정을 권고하게 되었음<sup>6)</sup>.

1) '인권'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(인권기본조례 제2조제1호)

2) '인권영향평가'란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·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로서, 평가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·측정하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, 이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평가를 의미함

3)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.(인권기본조례 제17조제2항)

4) 1. 차별 및 인권침해, 2.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, 3. 시민참여보장

5) 1.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, 2. 편견·선입견에 근거하여 대상을 한정, 3. 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, 4.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(상위법에 근거한 시설 이용 감면(면제)의 올바른 적용여부, 5. 반환권 제약(공공시설 이용 시 반환조항이 미비한 경우), 6. 구제권 제약(과태료 부과·징수의 법적근거 여부 및 구제절차 포함 여부), 7. 개인정보보호권 보장, 8.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참여권, 9.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 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

- 개정 권고내용 중에는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해제와 관련된 차별적 조항인 「정신상의 장애」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, 이는 ‘장애’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(붙임-2 참고).
-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제2호를 개정하여 ‘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’를 ‘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’ 및 ‘불가피한 개인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’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그 밖의 특이사항은 없음.
- 참고로, 서윤기 의원은 인권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‘의안번호 1643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부터 ‘의안번호 169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에 이르기까지 총 53개(이중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조례는 총 6건임) 개정조례안을 동시에 발의(‘20.7.13.)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바, 향후 위원회 소관조례 제·개정시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의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.

담 당 자	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윤 은 정
연 락 처	02-2180-8208
이 메 일	urbanth@seoul.go.kr

6) 출처: 서울시 보도자료, 2020.4.10.

## 【붙임-1】 관련규정

○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[서울특별시조례 제7663호, 2020.7.16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 9. 29., 2019. 3. 28.>

1. "인권"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

①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8조(인권영향평가)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 
[전문개정 2016. 9. 29.]

제14조(설치)

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·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(이하 "인권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 <개정 2016. 9. 29.>

②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6. 9. 29.>

1.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·자문
2.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·자문
3.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, 정책에 대한 자문
4.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
5. 그 밖에 시장,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·자문
6.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권고

③ (생략)

제17조(정책 등의 개선 권고)

① 시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·자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6. 9. 29.>

②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,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9. 29.>

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9. 29.>

**【붙임-2】 자치법규 개정 권고내용** (출처: 서울시 보도자료, '20.4.10.)

연번	인권영향평가				권고사유	
	평가항목	현재용어	대안용어	조항		
총 계				96		
1	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(9개 용어)	계		50		
		행상/노점상	→	거리가게	5	'거리가게'는 '행상/노점상'의 순우리말로 서울시 행정 순화어임(2013)
		미혼	→	비혼	1	미혼은 결혼을 못한 미완성의 상태라는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것으로 '하지 않은 것'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용어변경 필요
		부모	→	보호자	1	부모 외의 대상(조부모 등)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음
		소외계층·우범지역	→	취약계층·취약지역	14	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 및 해당지역에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
		저출산	→	저출생	11	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용어사용
		유모차	→	유아차	4	유모차는 '어미'만 들어가 평등육아 개념에 반하는 용어로 개선필요: '유아' 중심으로 표현
		자매결연	→	상호결연 (sister city)	12	성차별적 용어이며 우월적 관계를 나타내므로 보다 객관적인 용어로 순화 ※ 한국법제연구원(2015)에서 규정한 차별적 용어
		장애등급	→	장애정도	1	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선 필요 (장애인복지법)
		결손가정·결손가족	→	소년소녀가정·한부모가정 등	1	비정상 가족이라는 고정관념,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용어 서울시 행정순화어임(2019)
2	편견·선입견에 근거하여 대상을 한정	계		5		
		학생	→	청소년/시민	3	학생이 아닌 학교밖 청소년 등 사회적 다양성을 포함하는 용어 사용
		주부	→	여성	1	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고용중단 여성을 '주부'로 특정할 우려가 있고, 실제 여성인턴십 사업으로 운영중
		특정계층 지칭			1	편견과 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민을 특정함으로써 차별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음 ※ 주부, 학생 등 → 고용계약이 없는 자
3	입장 및 이용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			8	시설관리자가 조례에 명기되지 않은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통일된 근거마련 및 시민의 문화권 보장	
4	장애인의 문화권 제약			4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외출시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함. 이에 해당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인에 대해 관람(이용)료 면제하여 장애인 문화권 보장	
5	반환권 제약			8	시민이 공공시설의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, 관람권(이용권) 반환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마련하여 시민의 반환권 권리보장	
6	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미비로 인한 구제권 제약			20	과태료가 부과징수되는 경우,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(조항)를 마련하여 시민의 구제권 확보	
7	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			1	'장애'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, 「정신상의 장애」 문구 삭제 필요	